

징계규정

한국보험계리사회 내규 제4호
제 정 2013. 9. 26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보험계리사회 (이하 “본회” 라 한다)가 전문직단체로서의 신뢰 및 명성을 유지하고, 본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회원이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계리 등 관련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문가적 품위와 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징계의 대상자 범위) 본 규정에 의한 징계의 대상자 (이하 “관련회원” 이라 한다)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.

제3조(징계 등 조치) ①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보험업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
2. 계리업무에 대한 Peer review 결과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때
3. 계리검증업무 (퇴직연금평가, 기업가치평가, 각종 cash flow 평가, 선임계리사 검증업무, 상품/위험률검증 등 포함)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
4. 한국보험계리사회 정관, 정관에 의한 내규, 윤리기준 및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
5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6.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용을 실추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다수회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한 때

② 회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보하여야 한다.

③ 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 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윤리위원회에 징계 조치

의 의결을 요구한다. 이 경우 회장은 그 내용을 징계협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윤리위원회는 징계협의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심의·의결한 경우 그 결과를 의결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회원이 본회의 탈퇴를 신청한 경우에 회장은 해당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회부사건의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그 탈퇴신청서의 처리를 유보할 수 있다.

⑥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요구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등 조치의결결과가 보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회원에게 징계등 조치를 명한다.

⑦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회원에게 징계등 조치를 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등 조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.

제4조(징계 등 조치의 종류 및 병과 등) ①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징계 등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경고
2. 주의
3. 견책
4. 제명

② 보험업법, 본회 정관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징계 등 조치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해당기간 동안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.

1.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그 처분이 종료된 날 이후 2년까지
2. 윤리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견책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까지

③ 윤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에게 대하여 주의처분의 의결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주의처분의 의결을 받은 정회원에게 대하여는 경고처분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.

제5조(재심의 요구 등) ① 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윤리위원회의 징계 등 조치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회 집행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윤

리위원회에 당해 징계의결의 취소 및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심요구는 1회에 한한다.

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등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그 징계등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(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30일)이내에 회장에게 청구의 이유와 취지를 명백히 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 요청 등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.

③ 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징계 등 조치를 의결한 해당 위원회에 통지하고,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징계의 효력) ① 본 규정에 의한 징계는 윤리위원회가 징계의 통지를 관련 회원에게 보내는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전항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회원이 해당 판결에 관하여 제5조에 의한 재심의 요구를 한 경우 그 효력은 재심의 확정시까지 중단된다.

제7조(징계의 확정) 징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다.

1. 윤리위원회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발송하고, 제5조에 의한 재심의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 한 때
2. 제5조에 의한 재심의요구에 대한 재심의 기각 또는 결정의 수정을 통지한 때
3. 제5조에 의한 재심의 요구를 받은 사안에 관하여 집행위원회가 결정의 유지 또는 통지를 한 때

제8조(통지수단) 통지는 우편 또는 기타 통신수단으로 한다.

제9조(공시) 이 규정에 의한 징계 결정이 확정된 경우 회장은 회보에 공시한다.

제10조(윤리위원회 위원과 집행위원회 위원 겸직 금지) ① 윤리위원회 위원과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하지 못한다.

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3항의 재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하고 있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11조 (징계처분의 조회 및 기록말소) 징계처분의 조회 및 징계 등 처분기록부와 회원 명부의 징계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